

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방침

1. 추진배경

- 산업재해의 대부분이 사업주의 안전조치 소홀과 근로자의 안전수칙 위반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어
 -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,
 - 안전수칙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세부시행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안전수칙 위반근로자에 대한 제재방법이 없음
- ※ 산업안전보건법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되어 있으나, 「노동관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·징수업무에관한규정」(예규)에는 미반영
- 안전모, 안전대 등 보호구 미착용으로 인한 중대재해가 빈발하고 있어 산업재해의 감소를 위해서는 안전수칙 위반 근로자에 대한 제재도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었고
- ※ 안전모·안전대를 미착용하여 발생하는 추락·낙하에 의한 건설업의 조사대상 재해 사망자가 '95년 565명 중 285명(50.4%), '96년 674명 중 341명(50.7%)
- 산업안전선진화 3개년 계획에서도 근로자의

산업안전보건법 준수제도를 위해 과태료 부과토록 결정되어 추진

※ 산업안전선진화 3개년 계획 수립시 공청회 2회, 세미나 5회 개최

2. 근거규정

- 산안법 제25조 : 근로자는 사업주가 행한 안전·보건상의 조치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
- ※ 산업안전기준 및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의 근로자 준수사항 : 붙임(1) 참조
- 산안법 제43조제2항 : 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함
- 제72조제3항 : 제25조·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

3. 과태료부과 계획

- 부과금액 : 2만원~3만원
 - 2만원 : 해당근로자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(보호구 미착용 등)
 - 3만원 : 타인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

- 는 경우(운전위치 이탈 등)
 - ※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 및 범칙금 : 3만원~7만원
- 부과시기 : 97. 8. 1부터(사전 대대적인 홍보 및 계도 실시)
- 부과방법
 - 준수사항 위반 근로자 : 1차에 한해 경고장을 발부하고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
 -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 : 적정한 기간 내에 실시토록 행정지도하고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
- 개별위반사항별 과태료 부과기준 : 붙임 (2) 참조
- 부과 및 징수절차 : 붙임 (3) 참조

4. 향후 추진계획

- 건설업에 우선 시행한 후 그 효과를 분석하여 타산업에도 확대 실시
- 『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·징수업무에 관한 규정』, 『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』 및 『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』 개정
- 건설업체, 대한건설협회 및 대한전문건설협회에 안전수칙 위반 근로자 과태료 부과계획 관련 안내공문 발송
- 지방노동사무소, 한국산업안전공단 및 재해예방단체의 건설현장 방문시 안내유인물 배포
- 주요 일간지 등 각종 언론매체에 홍보 실시

산업안전기준 및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의 근로자 준수사항

- 유해·위험작업시 당해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 착용(안전기준 제28조)

- 양중기 작업시 신호준수 또는 운전자의 운전 위치 이탈 금지(안전기준 제102조·제103조)
-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운전자의 제한속도, 유도자가 행하는 유도·신호 준수 또는 운전위치 이탈시 조치사항 조치(안전기준 제175조·제177조·제178조·제181조)
- 차량계 건설기계 운전자의 제한속도, 유도자가 행하는 유도·신호준수 또는 운전위치 이탈시 조치사항 조치(안전기준 제220조·제222조·제223조·제224조)
- 항타기 또는 항발기 운전자의 권상장치에 하중을 견 상태에서 운전위치 이탈 금지 또는 신호 준수(안전기준 제245조·제248조)
- 굴착작업시 운반기계 등 운전자의 유도자가 행하는 유도 준수(안전기준 제390조)
- 채석작업시 굴착기계 등 운전자의 유도자가 행하는 유도 준수(안전기준 제435조)
- 양화장치 운전자의 작업중 화물을 적재한 상태에서 운전위치 이탈 금지(안전기준 제498조)
- 다량의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장소 등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허가없이 출입금지(보건기준 제24조)
- 인체에 해로운 가스·분진·소음·진동 등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작업시 보호구 착용(보건기준 제30조·제49조)
- 연업무 작업시 작업복, 보호의 또는 호흡용 보호구 착용(보건기준 제92조·제94조)
- 4알킬연 등 업무 작업시 보호구 등의 착용(보건기준 제115조)
- 유기용제업무 작업시 송기마스크 또는 유기ガ스용 방독마스크 착용(보건기준 제146조)
- 설비개선 등의 작업시 보호구 착용(보건기준 제170조)

붙임 2

개별 위반사항별 과태료 부과기준

붙임 3

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

- 「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, 징수업무에 관한 규정(예규 제269호)」에 부과 기준을 명시하고 동규정에 따라 부과 및 징수
 - 산업안전감독관이 현장에서 위반 근로자를 적발하고 확인서 징구
 - ※ 사진촬영, 목격자진술 등을 통해 위반 사실 채증
 - 지방노동관서의 장(산업안전과장)은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 근로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진술 기회 부여

- 지방노동관서의 장(관리과장)은 위반근로자에게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, 납부기한(발부일로부터 30일이내)을 명시한 납입통지서 발부
-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,
- 이의 제기를 받은 징수권자는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 재판을 함(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5항 및 제6항)

회원 여러분의 원고 투고를 환영합니다

<건설안전기술>협회지는 회원 여러분들의 협회지로서 관심과 참여 속에 더더욱 건실하게 설 수 있습니다.
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.

- 내용 : 현장체험기, 안전사고사례, 우리 협회 발전방향, 건설안전관련제도 개선점 건의, 신기술 및 공법 소개, 기타 건설안전관련 내용
- 기한 : 8월 · 11월 각월 20일까지
- 문의 : 편집담당 오명희 TEL. 3485-5840 FAX. 547-7084
 - * 심사 후 게재된 원고에 대하여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.

회원 가입 및 회비 납부 안내

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는 건설안전기술사 및 건설안전기사 여러분의 회원 가입을 언제나 환영하고 있습니다. 건설안전진단 및 점검, 재해예방기술지도, 건설안전교육 등으로 국내 최정상의 건설안전전문기관인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의 구성원으로서 건설안전의 선두주자가 되십시오.

또한 기회원분들께서는 미납된 회비를 조속히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더불어 회원 여러분의 자택 및 직장 주소 등 연락처 변경사항과 기타 공지사항 등을 바로 알려주시면 협회지 '협회소식' 란에 게재하여 회원 여러분께 알려드리며, 원활한 회원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.

- 회비 : 입회비 100,000원, 연회비 50,000원, 종신회비 500,000원
- 문의 : 총무부 TEL. 3485-5834 FAX. 544-9905